

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강 동 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안은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주요내용으로는 “대안교육”, “대안교육기관” 등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(안 제2조)하고, 대안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설치·운영(안 제5조)과 사전신고(안 제6조)를,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(안 제9조)등을 규정하였습니다.

-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서울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, 학교 교육이외의 다양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